

제주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1나1664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9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1가단2799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6,323,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3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0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7. 21. C에게 2억원을 이자 월 2%, 변제기 2018. 5. 21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’이라고 한다), 피고는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C로부터 2018. 10. 1.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5,000만원을 변제받았다.

다. 이후 G은 2021. 9. 28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1억 5,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, 2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. 2. 8.부터 2021. 7. 6.까지는 연 24%[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(2021. 4. 6.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이고, 2021. 7. 7.부터는 20%이다.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, 제4항에 따르면,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,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.

2) 위 인정사실과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, 원고는 G으로부터 대위변제받기 전까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원금 1억 5,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0. 2.부터 2021. 7. 6.까지는 연 24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

있었다고 할 것이고, G이 2021. 9. 28. 대위변제한 1억 5,000만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.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G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자,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(피고는, 원고가 2018. 10. 1.까지 변제받은 금원이나 G의 대위변제금은 변제의 이익이 큰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비용, 이자,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, 이자 상호간, 원본 상호간의 충당방법에 관한 민법 제47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).

3) 따라서 원고가 2021. 9. 28. G으로부터 변제받은 1억 5,000만원은 당시까지 발생한 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6,323,287원¹⁾에 먼저 충당되고, 나머지 43,676,713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2021. 9. 28.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원금 106,323,287원(= 150,000,000원 - 43,676,713원)이 남게 되므로,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06,323,28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의 다음날인 2021. 9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%의 비율(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, 약정이율을 연 20%로 인정한다)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,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원은 원고가 아니라, D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오히려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로 원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, 2017. 11. 22. C의 계좌로 2억원을 이체한 것은 원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2억원 전부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 또, C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1,33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E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,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018. 7. 25. 150만원, 2018. 8. 28. 300만원, 2018. 10. 1. 300만원을 각 이체한

사실은 인정되나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청구금액에 제외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일 뿐이고, 달리 위 금원이 추가 변제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 외 E 주식회사가 송금한 2018. 2. 28. 700만원, 같은 해 3. 23. 400만원, 같은 해 3. 30. 700만원, 같은 해 4. 30. 700만원, 같은 해 5. 23. 400만원, 같은 해 5. 28. 700만원, 같은 해 6. 22. 360만원은 그 예금내역서의 거래기록에 ‘제주도 이자’, ‘F 이자’ 또는 ‘제주도 F’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송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,330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섭, 판사 이승현, 판사 고은솔

1) $150,000,000\text{원} \times [24\% \times \{2\text{년} + 278\text{일}/365\text{일}(2018. 10. 2.\text{부터 } 2021. 7. 6.\text{까지})\} + 20\% \times 84\text{일}/365\text{일}(2021. 7. 7.\text{부터 } 2021. 9. 28.\text{까지})]$